

동작구의회공고 제2020-3 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0년 1월 31일  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제안이유

「양성평등기본법」 등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성인지 예산 편성 시 중점관리사업 선정·관리(안 제4조)
- 나.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기본지침 마련(안 제5조)
- 다. 성인지 예·결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(안 제6조~제7조)
- 라.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성인지 예산 편성·반영(안 제9조)
- 마.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사·연구·평가 등의 위탁(안 제10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323, FAX : 820-1474, E-mail : jurakim@dongjak.go.kr)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, 「성별영향평가법」,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회계법」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성인지 예산제”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·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.
2. “성인지 예산”이란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예산의 책정·배분의 과정을 말한다.
3. “성인지 결산”이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.
4. “성인지 감수성”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서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·기술·지식 등을 말한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

한다)은 양성평등의 목표, 대상사업의 선정, 예산의 수립·집행·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·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중점관리사업)**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·관리한다.

1.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」에 따라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
2. 사업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
3. 교육, 체육, 문화, 편의시설, 공공시설사업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
4.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
5.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2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업
6. 그 밖에 구청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5조(기본지침)** ① 구청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,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, 성인지 예산 수립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기본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을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8조 및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양성평등 시행계획과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9조의 성별영향평가결과 등과 연계하여 작성한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, 추진 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보완하도록 한다.

**제6조(성인지예·결산위원회의 설치)** 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지예·결산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」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대신한다.

**제7조(위원회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.

1. 제4조의 중점관리사업에 관한 사항
2. 제5조의 기본지침에 관한 사항
3.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, 대상, 수혜자 등의 연구 분석 및 권고
4.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의 개발
5. 성인지 예산 수립 과정에 관한 자문
6. 성인지 예산 및 결산 분석 결과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반영 권고
7.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정책 발굴

8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8조(교육과정 운영)** ① 구청장은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고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증진 및 제5조에 따른 기본지침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 목표, 수혜자 설정, 성과관리 등을 이해하도록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기본 또는 심화 연수 과정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**제9조(주민참여 및 지원)** ① 주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0조(사무의 위탁)** 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, 결과분석, 개선 방안마련 등으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·연구·평가 등의 업무와 제5조에 따른 기본지침의 제작은 전문성 있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11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